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5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1.

발 의 자 : 오기형 · 김남근 · 박지원
위성곤 · 신장식 · 김영환
박홍배 · 김현정 · 김 윤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취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감소, 사원의”를 “감소, 자기주식의 취득(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원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내국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내국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익금 또는 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 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 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 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 로 본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 제) ① ----- ----- ----- ----- ----- ----- -----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u>감소</u> , <u>사원의</u> 퇴사·탈퇴 또는 출자 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 <u>감소</u> , <u>자기주식의 취득(거래소에서</u> <u>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사원의</u>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 -----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
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신설>

5. · 6. (생략)

② (생략)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
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
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
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
전과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
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
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
비의 손금불산입) -----

1. · 2. (현행과 같음)

3.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